



# 대한민국 관광기업 화이팅!



코로나19로 고통받는  
대한민국의  
모든 관광기업들에게  
힘이 되겠습니다



문화체육관광부

---

## 코로나19대응 관광기업 지원안내

---

# 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



## 1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용자 [마감]

[대상]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용 1~8등급 관광사업체

\* 대기업, 중견기업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용자대상에서 제외

[지원내용] 사업체 운영비(인건비, 임차료 등) 특별용자(총 1,000억원 규모)

- (용자금리) 1.0% / (지원한도) 2억원 내 / (상환기간) 3년 거치 3년 상환

\* 신속 집행 위해 영업점 인력파견(2.17.~, 10명) 및 보조인력 배치(3.2.~, 50명), 용자집행 주기 축소(3.3.~, 주1회→주2회) 등을 조치하였음

[접수기간] '20.2.19.(수) ~ '20.4.20.(월) \*조기소진으로 마감기간 단축

[신청절차]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전화·온라인예약 후 방문접수, 이후 용자금 신청은 '20.12.11.(금)까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완료해야 함

[담당기관] 신용보증재단(1588-7365), 한국관광협회중앙회(02-2079-2446~7)

\*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영업점 문의 요망 (연락처는 10페이지 하단 참조)

## 2 관광기금 일반용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

[대상]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(국내 및 국외여행업 검업 등 40업종)

[지원내용] 기 시행중인 관광기금 일반용자 운영자금 확대(4,450억원→5,250억원)

\* 특별용자(1,000억원)를 제외한 규모임

### < 관광기금 일반용자 지원내용 >

- (용자금리) 대기업 및 중견기업(2.25%) 중소기업, 공공법인 및 개인(1.5%)
- (지원한도)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 (최대 신청 한도 : 30억원)
- (상환기간)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[신청절차] 신청기간 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체 지원센터에 접수

\* 2분기 접수기간 종료(~3.30.), **3분기 용자는 하반기에 접수 시작할 예정**

[담당기관] 한국관광협회중앙회 ☎ 02-2079-2446~7, <http://www.ekta.kr/>)

\* 시·도 및 업종별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

## 3 관광기금 용자원금 상환의무 유예 [마감]

[대상] 관광기금 용자 원금을 상환중이거나,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

[지원내용] 1년간 원금 상환의무 유예 및 만기연장 (약 2천억원 규모)

\* 원금을 상환중인 경우 상환유예,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

[접수기간] 2천억원 소진으로 마감('20.4.13.)

[신청절차] 既대출 은행(각 취급은행 영업점)에 직접 신청

## 4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

**[대상]** 주민등록상 제주도 내 3개월 이상 거주자(개인), 자본금 50억원 미만  
이면서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본점 또는 지점등록이 된 업체(법인)  
- (특별융자) 「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  
- (상환유예)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자

**[지원내용]** 금리(0.75%), 경영안정자금 및 건설·개보수자금 융자  
\* 금리는 분기별 변동, 융자한도는 개인 6~12억원 이내,  
법인 12~24억원 이내(업종별, 자금용도별 상이)

**[접수기간]** 특별융자(2.20.~5.18.), 상환유예(3.2.~5.18.)  
\* '20.6.30.(화)까지 거래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해야 하며, 미실행 시 자격소멸

**[신청절차]**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에 지원 (선착순)  
\* 상환유예는 거래은행과 상의 후 접수 (은행심사결과에 따라 유예여부 결정)

**[담당기관]**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  
☎ 064-740-6095~7/6084

## 5 소상공인 12조원 초저금리[1.5%] 금융지원 패키지

**[대상]**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(신용 1~10등급)

**[지원내용]** 시중은행(신용1~3등급 대상, 기업은행제외), 기업은행(4~6등급 대상),  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4~10등급 대상) 등 세 기관이 분담해 총 12조원 대출  
- (융자금리) 1.5%(세 기관 모두 동일)  
- (지원한도) 시중은행 3천만원, 기업은행 1억원, 소진공 1천만원  
- (상환기간) 시중은행 1년, 기업은행 최장 8년, 소진공 2년 거치 3년 상환

**[접수기간]** 접수 시작일 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
-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: '20.4.1.부터 접수  
-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: '20.4.1.부터 접수 ('20.4.6. 심사시작)  
- 소진공 경영안정자금(2차) : '20.5.18.부터 접수 (\*1차 금융지원 수혜자는 2차 제외)

**[신청절차]** 각 담당기관에 문의 후 방문(소진공은 출생연도 끝자리 날짜에 접수 가능)

**[담당기관]** 시중은행, 기업은행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\*  
\* 기업은행 (<http://ibk.co.kr>)  
\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<http://semas.or.kr/>, ☎ 042-363-7210)

## 6 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 지원

**[대상]** 저신용자(6등급 이하, 무등급포함) 및 저소득층(차상위계층 이하),  
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

**[지원내용]** 금리 4.5%이내, 최장 5년, 2천만원 한도 (총 4,400억원 규모)

구분	창업자금	운영자금	시설개선자금	긴급생계자금
대출한도	7천만원	2천만원	2천만원	1천만원
대출기간	6년 이내	5.5년 이내	5.5년 이내	5년 이내
금리	4.5%	4.5%	4.5%	4.5%

\* 긴급생계자금은 기존 창업·운영·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자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

**[담당기관]** 서민금융진흥원 (☎1397)

## 7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용자, 만기연장, 상환유예

[대상]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\*

\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, 마스크 제조기업은 매출액 요건 미적용

- 다음 중 하나의 매출액 감소 기준에 해당해야 함

비교기간	예시('20. 4.14 신청)
① 신청 전분기 / 신청 전전분기	'20.1분기 / '19.4분기
② 신청 전분기 / 전년도 신청 전분기	'20.1분기 / '19.1분기
③ 신청전월 / 신청 전전월	'20.3월 / '20.2월
④ 신청전월 / 전년도 신청전월	'20.3월 / '19.3월
⑤ 신청 당월(추정) / 신청전월	'20.4월 / '20.3월
⑥ 신청 당월(추정) / 전년도 동월	'20.4월 / '19.4월
⑦ 신청전 1개월 / 전전 1개월	'20. 3.14~4.13 / '20. 2.14~3.13
⑧ 신청전 1개월 / 전년 동기간	'20. 3.14~4.13 / '19. 3.14~4.13

\* 중국 내 최초 확진자 발생일('19.12.1) 이후부터 피해 기간.

[지원내용]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용자, 기존 용자 만기연장·상환유예

- (신규용자) 금리 2.15%(변동금리, 단 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은 1.9% 고정금리), 기업 당 연 10억원(3년 15억원 이내) 이내, 5년 이내 상환\*(거치기간 2년 이내)

\* 기업자율 상환제도 운영 (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로이 상환)

- (만기연장) 최소 상환요건(원금 25% 이상) 미적용, 가산금리 감면(0.5%p)

- (상환유예) 최소 상환요건(원금 10% 이상) 미적용, 유예기간 연장(6→9개월)

[접수기간] 경영애로 피해 발생(피해비교 가능시점) 이후 6개월 이내

[신청절차] 온라인 접수(www.kosmes.or.kr) 후 지역 본·지부 방문상담

[담당기관]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(http://www.kosmes.or.kr, ☎1357)

## 8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

[대상]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기업 (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내역 입증)

[지원내용] 최대 0.6%p 금리우대, 중소 50억원, 중견 100억원, 1년 지원

[접수기간/신청절차] 5조원 소진 시까지, 산업은행 영업점 방문접수

[담당기관] 산업은행 (http://kdb.co.kr, ☎02-787-5612)

## 9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

[대상]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

\* 소재, 부품, 장비 영위 기업, 유망서비스 영위 기업, 중소벤처기업, 지방 중소기업, 혁신성장 영위 기업,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

[지원내용]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특별한도 • 금리우대 용자

\*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 범위 내 특별한도 부여 (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)

\*\* 최대 0.5~1.0%p 금리 우대 (업종별 상이)

[신청절차] 기업은행에 문의 및 신청

[담당기관] 기업은행 (☎1588-2566)

# 고용을 지원합니다



##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

[지원대상]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
\* 매출액 15%감소 요건을 한시적으로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완화

[지원규모] 약 5,004억원 (지원금 일시적 상향)

[지원조건] 총 근로시간의 20% 이상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
종류	지원조건	지원수준
휴업	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,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	사업주가근로자에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 등의 3/4(대기업 2/3) 지원 *1일6.6만원한도 (연180일까지)
휴직	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	

[지원내용] 휴업·휴직 수당 지원비율 한시적 상향('20.2.1.~7.31.), 특별고용업종 지정

종류	일반업종 상향 (2.1~7.31)	특별고용지원업종 (3.16~9.15)
중소기업	2/3(66.7%) → 3/4(75%)	9/10(90%)
대기업	1/2(50%) → 2/3(66.7%)	2/3(66.7%)~3/4(75%)

\* 여행업·관광숙박업·관광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(3.16.) [붙임]참고

\* 항공기취급업·면세점·전시, 국제회의업·공항버스 추가 지정(4.27) [붙임]참고

[신청절차] 지역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


[담당부처]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(상담센터 ☎1350)

## 붙임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

[ 지정 업종 ]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항공기 취급업, 면세점, 전시·국제회의업, 공항버스 (공연업 포함 총 8개 업종지정)

업종	분류 기준	
여행업	업종코드	· N752(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)
	개별법	·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, 제4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한 업체
관광숙박업	업종코드	· 55101(호텔업), 55103(휴양콘도 운영업)
	개별법	·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, 제4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한 업체 (호텔업, 휴양콘도 미니멈업)
관광운송업	업종코드	· 49232(전세버스 운송업), 50111(외항 여객운송업), 50121(내항 여객운송업), 50201(내륙 수상여객 및 화물운송업), 50202(항만 내 여객 운송업), 51100(항공 여객 운송업)
	개별법	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·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수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·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·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업체
항공기취급업	업종코드	· 52939 (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)
	개별법	· 항공사업법 상 '항공기취급업' 으로 등록된 업체 · 다만, 항공기취급업 등업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매출액의 50%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, 근로자(퇴직자 포함)의 경우 항공기 취급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(퇴직자 포함)가 지원대상이 됨
면세점	업종코드 개별법	· 47130 (면세점) · 관세법에 따른 '보세판매장 특허' 취득 업체
전시·국제회의업	업종코드 개별법	· 75992 (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) ·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· 관광진흥법에 따른 '국제회의업' 등록업체
공항버스	업종코드 개별법	· 49219 (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) ·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매출액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

**[ 주요 지원내용 ] 고용유지지원금(휴업·휴직수당), 직업훈련 등**

구분		일반		특별고용지원 업종
고용유지 지원금 (유급휴업 휴직)	지원 수준	우선지원대상기업 2/3(66.7%) 대규모기업 1/2(50%)~2/3 (66.7%)		우선지원대상기업 90% 대규모기업 2/3(66.7%) ~3/4(75%)
	지원 한도	1일 66,000원		1일 7만원(대규모기업 66,000원)
고용유지 지원금 (무급휴업)	지원 요건	① 무급휴직 실시(90일)		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
		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(3개월)		
직업훈련	사업주 훈련지원	지원한도	납부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240%)	납부보험료의 130% (우선지원대상기업 300%)
		훈련비 지원단가	우선지원대상기업 100% 1,000인 미만 60% 1,000인 이상 40%	우선지원대상기업 150% 1,000인 미만 100% 1,000인 이상 90%
	국민내일 배움카드	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		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~20%
	훈련연장 급여요건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1호~제4호 요건 모두 충족	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 조제1항 제1호만 충족
	생계비 대부한도	1명당 1천만원		1명당 2천만원

**[ 추가 지원내용 ]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**

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			
특별고용 지원업종	일반절차	→ 유급휴업 1개월 → 무급휴직 30일 이상 (30일 전 신고)	최대 180일 1일 최대 6.6만원
	신속지원 프로그램	→ 즉시 무급휴직 30일 이상 (7일 전 신고)	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(월 50만원)

※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확대 (단,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+ 무급휴직)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절차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

## 2 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

[ 지원대상 ] 코로나19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·기업

[ 유형별 지원방안 ] 총괄표 참조 (납부유예의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)

	건강보험	국민연금	고용보험	산재보험
	3월 부과분 납부기한(~4.10.)			
납부 유예 (신청 시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제가입자중희망자 (소득감소 요건 충족)</li> <li>• 3개월납부예외확대</li> <li>• 3~5월 부과분 (~4.15.까지 신청 시)</li> <li>* 3월부과분 5월 환급</li> <li>* 4~6월분은~5.15.까지신청시 유예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0인 미만 사업장</li> <li>• 3개월납부기한 연장</li> <li>• 3~5월 부과분 (~5.10.까지 신청 시)</li> <li>* 단, 3월납부한금액은 환급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0인 미만 사업장 + 1인 자영업자 + 특고</li> <li>• 3개월 납부기한 연장</li> <li>• 3~5월 부과분 (~5.10.까지 신청 시)</li> <li>* 단, 3월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</li> </ul>
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험료하위 20~40%</li> <li>* 하위20%</li> <li>▶ 감면(50%)</li> <li>• 3개월 30% 감면</li> <li>• 3~5월 부과분</li> <li>* 3월감면분은 4월분 고지서에합산하여 감면</li> </ul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0인미만사업장 + 1인 자영업자 + 특고</li> <li>• 6개월 30% 감면</li> <li>• 3~8월 부과분</li> <li>* 3월 감면분은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</li> </ul>
담당 부처	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	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문의 (누리집)	국민건강보험공단 (☎1577-1000)	국민연금관리공단 (☎1355)	고용노동부상담센터 (☎1350)	근로복지공단 (☎1588-0075)
	<a href="https://www.nhis.or.kr">https://www.nhis.or.kr</a>	<a href="https://www.nps.or.kr">https://www.nps.or.kr</a>	<a href="https://www.ei.go.kr">https://www.ei.go.kr</a>	<a href="https://www.kcomwel.or.kr">https://www.kcomwel.or.kr</a>

# 세정을 지원합니다



## [ 내국세, 지방세, 관세 ]

### 1 내국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[지원대상] 자영업자,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\*  
\*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·관광·여행·공연·음식·숙박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
[지원내용]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- (신고·납부기한 연장) 법인세(3월 확정신고), 부가가치세(4월 예정신고) 등 신고·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
- (징수·체납처분 유예) 既 고지된 국세는 징수 유예(최대 9개월),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
- (세무조사 연기)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단, 이미 세무조사를 사전통지 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가능
- (전담대응반 운영) 본청 및 각 세무서에 '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' 설치

[시행시기] 즉시 시행

[담당부처]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(☎국번 없이 126, 3번→2번)

### 2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[지원대상] 확진(격리)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(의료, 여행, 공연, 유통, 숙박, 음식업 등 / 유흥업소 제외)

[지원내용]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- (신고·납부기한 연장) 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\*  
\*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중업원분 등
- (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) 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
- (세무조사 유예)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

[시행시기] 행안부 → 지자체 지침 통보(2.5.)

[담당부처]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관할 지자체 세정과

### 3 관세 납기연장, 당일환급, 관세조사 유예 등

[지원대상]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

[지원내용] 납기연장, 당일 관세환급, 관세조사 유예, 애로해소센터 운영 등

- (납기연장·분할납부)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부·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(2.6.~)
- (당일 관세환급)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 건은 P/L(Paperless)로 전환 하여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. 지급 (2.6.~)
- (관세조사 등 유예)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,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 시 연기 (2.6.~)
- (애로해소센터 운영)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 지원 시행 (즉시 시행)  
\* 인천·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평택에 「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」 설치

[담당부처] 관세청 심사정책과 (☎ 042-481-7863, 국번 없이 125, 20번→2번)

#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



## 1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

[대상]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
[지원내용] 담보가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· 기업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함

	소상공인	피해기업	중소기업
지원한도	7천만원(5년 이내),	3억원	신용보증기금 문의
보증비율	상향조정(85%→100%)	상향조정(85%→95%)	상향조정(85%→95%)
보증료율	0.8%	1.0%	기존 보증료율 대비 0.2%p 우대
기타 지원			심사 간소화
문의	지역 신용보증재단 (☎1588-7365)	기술보증기금 (☎1544-1120)	신용보증기금 (☎1588-6565)

## 2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

[대상]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받은 기업

[지원내용]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대출보증기한 연장

- (지역신보) '20.6.30. 이전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의 보증기한 연장(1년)
- (신용보증기금) '20.9.30.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대출보증 전액 만기연장

[신청절차]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 및 신청 / 신용보증기금 전화 신청

<전국 주요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연락처>

지역	전화 번호	지역	전화 번호	지역	전화 번호
서울	1577-6119	부산	051-860-6600	강원	033-260-0001
대구	053-560-6300	인천	1577-3790	충남	041-530-3800
광주	062-950-0011	대전	042-380-3800	전남	061-729-0600
울산	052-289-2300	경기	1577-5900	경남	1644-2900
충북	043-249-5700	전북	063-230-3333	경북	054-474-7100

\* 신용보증기금 (☎1588-6565)

### 3 신속 · 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

[대상]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[지원내용] 한도 5,000만원 융자지원

\* 우대사항 : 100%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

[신청기간] '20.4.1 부터 신보 · 기보 · 지역신보 중 한 곳에서만 신청

\*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

[담당기관] 기술신용보증기금 (☎1544-1120)

### 4 중소기업 활력 보강 프로그램

[대상]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\*

\* 대상 : ▲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(2.5조원 규모) ▲주력산업부문 영위  
중소기업(1조원 규모) ▲경영 애로 겪는 중소기업(1.9조원 규모)

[지원내용] 보증료율 0.2%p 차감, 보증비율 상향 적용

\*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연장 혜택을 추가 제공하나, 보증료율 0.2%p 차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

[신청방법]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

[담당기관] 신용보증기금(☎1588-6565)

#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

[ 기타 지원사항 ]



## 1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

- [ 대상 ] 관광벤처기업, 관광분야 유관기업 등 관광관련 사업자
- [ 지원내용 ] 코로나19 관련 부처별 지원대책 안내 및 경영상 애로사항 접수, 기존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 중 지원 가능한 사업 상세 안내
- [ 담당기관 ]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(☎02-729-9454/9494)

## 2 호텔등급평가 심사유예

- [ 대상 ] 호텔업종
- [ 지원내용 ]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까지 호텔등급평가 유예\*
- \* 매 3년마다 등급심사 필요 → '20년 약 352개 업체 대상 (총 심사비용 약 6.2억원)
- [ 시행시기 ] '20.4.28~ (심사대상 업체 등급 유효기간 자동 연장)
- [ 담당부처 ]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(☎044-203-2870~1)

## 3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추진

- [ 대상 ] 유원시설업종
- [ 지원내용 ]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 50% 감면\*
- \* 약 25백개 기구에 확인검사(1~20만원) 및 안전성검사(22~60만원) 필요
- [ 시행시기 ] 6월 중 시행예정 ('20.1.31.~'20.12.31. 1년 치 소급하여 감면 적용)
- [ 담당부처 ]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(☎044-203-2863, 2868)

## 4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

- [ 대상 ] 공항상업시설\* 입주기업
- \* 면세점, 음식점, 은행, 환전소, 편의점, 급유, 기내식 등 포함
- [ 지원내용 ]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 ·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50%로 상향(25%→50%)하고, 대 · 중견기업 임대료 20% 신규 감면
- [ 지원기간 ]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%도달 시까지  
최대 6개월 한시적용 (3~8월, 3월분 소급)
- [ 담당기관 ] 인천공항공사(☎1577-2600), 한국공항공사(☎1661-2626)

## 5 카드사 혜택 확대

[대상] 코로나19 피해 우려 영세·중소가맹점 (연매출 5억원 이하)

[지원내용]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(카드사별 상이)

- \* (C사)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,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,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
- \* (D사)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, 소비영향 분석 지원,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

[신청절차] 각 카드사 문의 (신한, 국민, 삼성, 현대, 비씨, 하나, 우리, 롯데)

- \* 신한카드(1544-0887), 국민카드(1588-1688), 삼성카드(1588-8700), 현대카드(1577-6000), 비씨카드(1588-4000), 하나카드(1800-1111), 우리카드(1588-9955), 롯데카드(1588-8100)

## 6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·사업정리 및 재기지원

[대상] 점포 재개장, 사업정리,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

- \* 중복수혜 불가대상 추후 발표 가능성 있음

[지원내용] 점포 재개장(3백만원), 사업정리(2백만원), 재기비용 지원

[신청기간] '20년 4월부터 신청가능

[담당부처] 고용노동부 (☎국번없이 1350), 전국 고용센터

- \* 관련 누리집 : <https://www.di.go.kr/ei/eih/cp/cc/ccNtbd/retrieveCcNtbdInfo.do>

## 7 코로나19 격리·입원 근로자 유급휴가비 지원

[대상] 코로나19로 격리, 입원치료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
- \* 생활지원비와 중복 수혜 불가

[지원내용]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(일 최대 13만원) 지급

[신청기간] '20년 4월 17일부터 접수

[신청절차] 국민연금공단 지사 통해 신청 가능

[담당기관] 국민연금공단(☎ 국번없이 1355)

# [근로자 대상 지원사항]

## 1 [무급휴직]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(지자체별 상이)

[대상]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

\* 중복수혜 불가대상은 추후 발표 가능성 있으며, 구체적인 대상 및 지원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

[지원내용]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 지원 (최장 2개월)

[신청기간] '20년 4월부터 신청 가능

[신청기간] 고용노동부 (☎ 국번없이 1350), 사업장 소재지 광역자치단체

## 2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

[대상]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(대기업, 공공기관 포함)

- ①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코로나19 확진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-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,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▲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, 휴교, 개학연기(온라인 개학)를 실시한 경우 ▲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(원)교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▲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

[지원내용]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(최대 10일 지원)

\*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. 일 근로 4시간 이하는 일 25,000원 지원

\*\* 사업장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신청 불가

[신청기간] '20.3.16~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

\*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('20.1.20)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 지원

[담당부처] 고용노동부 (☎ 국번없이 1350), 전국 고용센터

\* 관련 누리집 : <https://www.di.go.kr/ei/eih/cp/cc/ccNtbd/retrieveCcNtbdInfo.do>

## 3 특수형태근로자·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

[대상]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학습지교사, 보험설계사, 골프장 캐디, 대리운전자 등) 및 저소득 노동자 (월 평균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)

\* 단,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

[지원내용] 무담보 초저금리(연1.25%) 1인 최대 2,000만원 융자

\* 최대 1천명 (총 49억원 규모)

[신청기간] '20년 4월부터 신청 가능

\* 중복수혜 불가대상 추후 발표 가능성 있음

[담당부처] 근로복지넷 (☎ 1588-0075)

## 참고 시·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 현황

구분	추진 내용	피해신고센터
서울	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민생경제대책반 구성·운영 피해중소기업·소상공인대상 경영안정자금(5,000억원) 및 특례보증(5,000억원)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(2.14.)	서울기업지원센터 (☎02-2133-3119)
부산	민·관 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 설치·운영 소상공인대상 특별자금(4,000억원) 및 피해기업(소상공인) 특례보증(150억원) 지원 피해기업추가자금(1,000억원) 긴급지원및피해극복을위한자금기탁 (BNK, 100억원)	부산경제진흥원 피해지원센터 (☎051-660-1713~6) 부산상공회의소 피해지원센터 (☎051-990-7063~6)
대구	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대책본부 구성·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200억원) 및 특별보증(200억원) 지원 코로나19대응지역경제안정화대책추진	코로나19피해기업 신고센터 (☎053-803-1119)
인천	코로나19대응 경제대책반 및 경제대책상황실 구성·운영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(650억원) 및 소상공인대상 특례 보증(250억원) 지원 피해 업체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	경제대책상황실 (☎032-440-8242~3)
광주	코로나19 경제대책 상황실 설치·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2,300억원) 및 특례보증(732억원)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활성화대책발표(2.12.)	코로나19지원제도 종합안내 원스톱센터 (☎062-960-2624)
대전	코로나19관련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( <del>피해접수창구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운영</del> )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대상 경영안정자금(1,420억원) 지원 피해기업 구매조건 생산자금 100억원 특별배정 및 피해기업 세제 지원 등	대전경제통상진흥원 피해접수창구 (☎042-380-3035)
울산	자동차산업 대응지원센터 운영 피해중소기업·소상공인대상 경영안정자금(1,200억원) 지원 지방세지원, 울산페이이용활성화추진(결제금액3%포인트추가 지급)	지역경제·산업대응센터 (☎052-229-2720) 자동차업종대응지원센터 (☎052-219-6623)
세종	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대상 경영안정자금(250억원) 확보 코로나19 대응 예비비 편성(154백만원) 지방세 지원(신고·납부 기한 연장,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)	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(☎044-300-4143)

구분	추진 내용	피해신고센터
경기	코로나19 대응 경기도 경제 TF 설치·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대상 경영안정자금(2,000억원) 및 특례보증(8,500억원) 지원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(2.6)	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피해신고센터(소상공인) (☎1600-8001)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피해신고센터(중소기업) (☎031-259-6119)
강원	민·관 합동 비상경제 대책본부 구성·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대상 경영안정자금(700억원) 지원 소비촉진 및 경기활성화 특별대책 수립(2.13.)	소상공인피해신고센터 (☎033-249-2734) 중소기업피해신고센터 (☎033-249-2757)
충북	경제상황점검 및 대응 TF 구성·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0억원) 및 특례보증(50억원) 지원 지방세지원,지역사랑상품권조기발행및할인확대추진	기업피해 신고센터 (☎043-220-3463)
충남	지역경제 대응 TF팀 구성·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대상 경영안정자금(6,624억원)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(2.13.)	충남경제진흥원 기업애로접수창구 (☎041-539-4592)
전북	전북 경제상황대응 TF 구성·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대상 경영안정자금(1,000억원) 및 특례보증(200억원) 지원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 확대,지역사랑상품권조기발행및할인확대추진	기업·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 (☎063-711-2012)
전남	경제상황 대응 T/F 구성·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00억원) 및 특례보증(400억원) 지원 지방세 지원, 시·군 지역사랑상품권 조기발행	중소기업·소상공인애로 통합신고센터 (061-288-3833) 중소기업 (061-729-0651) 소상공인
경북	코로나19 대응 경북 경제 T/F단 구성·운영 중소기업·소상공인대상 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 (당초300억원→1,200억원증액) 수출업피해기업커뮤니티시장개척등기업예산10억원지원	기업피해신고센터 (☎054-880-2671) (☎054-880-2674)
경남	경상남도코로나19 경제상황대응반 및통합신고센터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00억원) 및 특례보증(200억원) 지원 수출업피해기업커뮤니티시장개척등기업예산10억원지원	경상남도 기업·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(☎1899-1745)
제주	코로나19대응및 지역경제위기극복을위한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출범(2.13.)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대상 경영안정자금(9,000억원) 및 특례보증(1,000억원) 지원 관광사업체대상 관광진흥기금5,700억원특별지원 (특별용자3,000억원상환유예2,700억원)	기업애로 신고센터 (☎064-710-2522) 수출기업애로 신고센터 (☎064-757-2811)

